#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61

발의연월일: 2022. 8. 16.

발 의 자:배준영·조명희·박대수

윤창현 • 최춘식 • 최재형

이태규 • 강대식 • 김예지

김영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외국인 중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거나 내국인 중 자연계·이공계 등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의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이국내에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등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또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외국인 전문인력이 국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거나 기술력을 보유한 내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감면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내·외국인 기술 인력을 확보함 으로써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8조 의3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5년"을 "10년" 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
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득세의 감면) ①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	
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	
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	
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 <u>2023년 12월 31일</u> 이전인 경	<u>2025년 12월 31일</u>
우만 해당한다)부터 <u>5년</u> 이 되	<u>10년</u>
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	
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	
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	
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u>2022년 12월 31일</u>	<u>2025년 12월 31일</u> -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	

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 ④ (생 략)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 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 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 업일(2022년 12월 31일 이전 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u>2025년 12월 31일</u>
<u>10년</u>
•

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 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 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 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 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